태왕 THE 아너스 오페라 오피스텔 모집광고

7월 9일(금) 견본주택 오픈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 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견본주택 및 사전예약제 운영안내
- 태왕THE아너스 오페라 견본주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견본주택(http://thehonors-opera.com) 및 사전예약 관람을 병행 운영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태왕THE아너스 오페라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이버 견본주택 (http://thehonors-opera.com)을 통해 분양일정 안내, 청약 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견본주택은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정도에 따라 예약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 주체의 결정에 따라 폐쇄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 가능 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일 이후 견본주택관람은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 기간 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체온이 37.5°C 이상인 경우(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 측정)
  ※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목 아픔) 등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 사업 주체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관람이 불가합니다.

■ 분양 상담 전화(☎053-756-2900),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양 광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와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분양 광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 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 북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매제한 및 거주자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분양 광고일(2021.07.02) 기준입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 공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분양 호실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1.07.02) 현재 대구광역시 거주자에 한해 우선 공급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여 호실 공급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 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20.2.21부터 적용)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 32278(2021.07.02)로 분양신고

■ 공급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62-11번지 일원

■ 공급 규모 및 내역 : 지상 2층, 지상 37층 1개 동 오피스텔 66실 및 부대 복리시설 (별도 분양예정 : 공동주택 532호실 근린생활시설)
- 대지 :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 대지면적 : 총 10,061.80㎡ 중 오피스텔 984.9868㎡
- 건축물 연면적 : 총 109,625.2086㎡ 중 오피스텔 13,406.8780㎡
- 본 건축물은 주거복합단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이 복합되어 계획되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호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 순위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2025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단축)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진설계가 되어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0.224g입니다.

■ 오피스텔 주차대수 : 87대
※ 오피스텔 주차장은 105동 인근 지상 2층에 오피스텔 전용 주차공간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오피스텔 주차공간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 층별 용도

구분	용도
지하 4층 ~ 지상 1층	주차장 (공동주택용)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	주차장 (오피스텔용)
지상 3층	부대 복리시설
지상 4층 ~ 지상 23층	오피스텔, 공동주택
지상 24층	피난안전구역
지상 25층 ~ 지상 37층	오피스텔, 공동주택
지상 38층 ~ 지상 49층	공동주택

■ 공급면적

(단위 : ㎡, 실)

타입	호실 수	실별 계약면적						계약면적	실별 대지지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부대 복리시설	주차장	소계		
OF80	66	80.5737	46.1081	126.6818	11.2314	65.2211	76.4525	203.1343	14.9240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되어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기거나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호실별 소수점 이하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하였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입의 구분은 분양광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변경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해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실, 원, VAT 포함)

타입	동호 라인	층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계약 시	2022.04.17	2022.11.17	2023.06.17	2024.01.17	2024.08.17	2025.01.17	입주지정일
OF80	105동 1, 2호	4	2	118,459,000	208,673,636	20,867,364	348,0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104,400,000
		5	2	119,140,000	209,872,727	20,987,273	350,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105,000,000
		6	2	119,821,000	211,071,818	21,107,182	352,0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105,600,000
		7	2	120,502,000	212,270,909	21,227,091	354,0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106,200,000
		8	2	121,182,000	213,470,909	21,347,091	356,0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106,800,000
		9	2	121,863,000	214,670,000	21,467,000	358,0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107,400,000
		10~20	22	122,544,000	215,869,091	21,586,909	360,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108,000,000
		21~30	18	123,225,000	217,068,182	21,706,818	362,0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108,600,000
		31~37	14	123,906,000	218,267,273	21,826,727	364,0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109,200,000

■ 거주자 우선 분양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대구광역시)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거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 포함)로서 청약 신청한 자 중 대구광역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
- 우선 분양 신청결과 경쟁 발생 시 사업 주체는 기준에 따라 당첨자 및 호실을 공개추첨하며 우선 분양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청약자에 포함됩니다.

타입	공급 호실(수)	신청유형 호실(수)		비고
		거주자 우선 공급(10%)	일반공급 호실	
OF80	66	6	60	※ 주민등록 등본상 대구광역시 거주자 우선 당첨자 선정

■ 공통사항
- 분양공급과 관련하여 사업 주체 홈페이지(http://thehonors-opera.com)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청약으로 진행합니다.
- 총 분양대금은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분양대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구. 등록세 포함)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 또는 동별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나머지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체료 및 대출이자가 발생할 경우 중도금 및 잔금보다 선위순위로 변제 합니다.
-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 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1차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날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주체가 본 오피스텔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원활한 주택사업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사업보증을 이용하여 대구은행으로부터 건설자금(사업 대지비 및 기타사업비 등)을 지원받은 주택으로 주택형별로 대출되며 준공 후 입주자에 대환하거나 사업 주체가 상환예정입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대금 중 중도금은 대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계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방식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있습니다. (2014.12.03 개정)
- 면적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 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추후 시설별 면적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대지지분의 시설별 분할면적은 공급 당시 기준으로 합니다.
- 호실별 대지지분은 시설별 대지지분에서 호실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향후 지적확정 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대지를 지분별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 가능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받은 오피스텔이며, 계약자는 사업 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 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중 선납한 금액으로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지정된 계약금 계좌 외에 타 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별도의 이자나 할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분양광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Ⅱ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청약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분양 광고일 현재(2021.07.02)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합니다.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실(건)만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접수 방법은 견본주택 내 후 접수를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분양 호실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거주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1.07.02) 현재 대구광역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 추첨 및 당첨자 발표는 청약신청 접수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청약일시	추첨일시	당첨자 발표	계약일정
일시	2021.07.09(금) ~ 2021.07.11(일) 10:00 ~ 16:00	2021.07.12(월) 11:00	2021.07.12(월) 16:00 이후	2021.07.13(화) 10:00 ~ 16:00
장소	태왕 THE아너스 오페라 견본주택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119-8번지)		당사 홈페이지 (http://thehonors-opera.com)	태왕 THE아너스 오페라 견본주택

※ 본 오피스텔 분양 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으로 당첨자 및 호실을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는 청약신청 접수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청약,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사업 주체에게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의 층수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 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 선정하지 않으며, 정당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호수 발생 시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청약신청금 및 납부계좌

구분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금융기관	신청금 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오피스텔	일백만 원(1,000,000원)	지정계좌로 무통장입금	대구은행	504-10-421680-6	코리아신탁(주)

■ 청약 시 구비서류 (공통)

구분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배우자 포함)	• 청약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청약자 본인 인감증명서 1부 • 청약자 본인 인감도장 또는 서명(배우자일 경우 청약자의 인감도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사본 1부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인 본인 명의) • 청약신청금 무통장입금증
법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법인 인감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사본 1부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지참 •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 법인 명의) • 청약신청금 무통장입금증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 본인 또는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당사 견본주택 비치) - 청약자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사본 1부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사본 1부 - 대리인 도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분양 광고일(2021.07.0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금을 입금하고 신청서류도 제출하여야 청약으로 인정됩니다. 청약금만 입금하고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이 무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일시 : 2021.07.12(월) 11:00
- 추첨방법 : 당사 견본주택에서 각 청약신청 타입 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발표 : 2021.07.12(월) 16:00 이후
- 당첨자 확인은 당사 홈페이지(http://thehonors-opera.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 안내가 불가하고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에 의거 사업 주체가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합니다.
- 당첨자 선정 후 서류심사 부적격자 발견 시 무효처리하며 어떠한 이의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부적격자로 무효처리된 호실은 본 분양 광고와 무관하게 사업 주체가 임의 분양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구체적인 공급조건에 대해서는 사전 문의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방법
- 환불예정 기간 : 추첨 및 당첨자 발표로부터 3주 이내
- 환불대상 : 청약자 전원
- 환불방법 : 청약신청 시 제출한 청약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처리합니다. (환불계좌 오류, 환불서류 미비 등 송금불능 사유 발생 시 환불일자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 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은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신청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최초 분양 광고일(2021.07.02(금))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합니다.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하여 분양호실 10%를 대구광역시 거주자에 우선 선정합니다. (대구광역시 거주자는 청약신청 시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청약해야 우선 분양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대구광역시 거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검토 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도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견본주택 방문 청약으로 진행하며 인터넷을 활용한 청약은 받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자 1인당 타입별 1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건 이상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호실은 무작위로 공개 추첨하여 결정되며, 당첨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하지 않으며,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습니다.

▷ 공통
-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사업 주체에게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의 층수, 향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 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정당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 시 사업 주체가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 신청 환불계좌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 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Ⅲ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 당첨자 계약 기간 : 2021.07.13(화) [10:00~16:00]

■ 계약체결 장소 : 태왕THE아너스 오페라 견본주택(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119-8) / 문의전화 : 053-756-2900

■ 계약금 납부 : 아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아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합니다.

■ 지정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 계약체결 신청서 (견본주택 비치) - 계약금 무통장입금증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본인 발급용에 한함,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사본 1부) - 계약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계약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거주자 우선 공급 당첨자로서 주민등록 등본상으로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 거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법인 계약 시	- 계약체결 신청서 (견본주택 비치) - 계약금 무통장입금증 - 법인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사본 1부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지참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견본주택 비치) - 계약자 인감증명서 1부(본인 발급용에 한함, 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및 도장

- 상기 구비서류는 최초 분양 광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선납할인 안내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 기간에는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 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 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 기간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납부계좌	대구은행	504-10-421680-6	코리아신탁(주)	

- 지정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입금 시 비고란에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입금 시 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 → '1010101 홍길동' / 102동 702호 계약자 → '1020702 홍길동'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 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지정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할 수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주민등록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으로 당첨 및 계약 체결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청약 신청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청약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로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오피스텔 배치구조 및 층, 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오피스텔의 전매 가능 시기는 계약금 완납 및 전매일 당일까지 사업 주체에 미납된 채무가 없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분양 및 계약체결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세부 사항은 공급계약서 참조) 단, 중도금 납부 시에는 해약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 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라며,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사업 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 분양 광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입점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과 별개로 관리, 운영되며 관리비 또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과 별개로 부과됩니다.(단,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과 관리단과 협의에 의하여 통합관리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오피스텔은 중도금 대출 이자 무이자이며,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납부하고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입주지정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변경된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업 주체가 납부하고, 변경된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가 부도 또는 파산 시 사업 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가 선정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10%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제반 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 사정(신용불량 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 불가 등)에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 사정(신용불량 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 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 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급계약을 체결한 모든 계약자는 사업 주체 또는 업무대행자로부터의 별도의 납부 통지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급대금(중도금 및 잔금)을 공급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거주지의 변경, 여행, 통신업체의 사정으로 인한 연락 미수신 등의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및 납부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이행하여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 광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1항에 따라 전매가 가능합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2항 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계약금 10% 완납 이후 사업 주체에 대한 채무이행 및 사업 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0의 2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 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 월 안내
- 입주예정 : 2025년 07월 예정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또는 사업 주체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전쟁, 내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공사일정 및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 사업 주체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지 아니하여 계약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 등)는 사업 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실입주 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 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취득일(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Ⅳ 추가 선택품목 계약

■ 추가 선택품목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품목	제품 사양	공급금액	납부금액 및 일정		비고
				계약금(계약 시)-20%	잔금(입주 시)-80%	
OF80	비스포크 냉장고	RR39A7695AP	1,650,000	330,000	1,320,000	
	비스포크 냉동고	RZ32A7665AP	1,750,000	350,000	1,400,000	
	비스포크 냉장고/냉동고 (2SET)	RR39A7695AP+RZ32A7665AP	3,300,000	660,000	2,640,000	
	식기세척기	DW60T7065SS	900,000	180,000	720,000	
	에어컨 선택	2대 / 침실2+침실3	2,800,000	560,000	2,240,000	

■ 추가 선택 옵션품목 유의사항
- 추가 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오피스텔 공급계약과는 별개입니다.
- 추가 선택 옵션품목 금액은 오피스텔 분양금액과는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 옵션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 옵션품목과 관련하여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 옵션품목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 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 옵션품목은 본 오피스텔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 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의 선택사항으로 금액 등 세부 사항은 사업 주체와 시공사에서 임의 결정한 금액이며, 분양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유상 옵션공사비(부가세 포함)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은 동일 제품일지라도 산정기준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 옵션품목 미선택 시에는 가구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참조)
- 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비스포크 냉장, 냉동고 옵션품목 미선택 시 냉장고 상부 장이 설치되며, 일반 냉장고 설치 시 상부 냉장고장보다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으로 인해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이상의 타사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호실별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는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합니다.
- 실외기 설치 시 호실별 설치요건에 따라 냉매 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호실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호실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의 크기는 옵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품목 미선택 시 침실2, 침실3에는 냉매 배관 및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입금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대구은행	504-10-183139-2	㈜태왕이앤씨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오피스텔 분양금액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102동 503호 홍길동 →1020503홍길동(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Ⅴ 유의사항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 및 팜플렛, 견본주택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 및 계약 시 분양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당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여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호실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오피스텔의 마감 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오피스텔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오피스텔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향상이나 개인 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잔금 완납 후 계약자 스스로 적법하게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배치구조 및 동 · 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호실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견본주택으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인허가 및 실시공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 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 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 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 단지 배치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 · 전기실 · 발전기실 등의 급 · 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호실은 소음, 냄새, 진동, 해충, 매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 · 외 도로(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호실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출차 주의 경보음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호실은 가로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오피스텔은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 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인허가 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은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구조개선 및 마감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 주체가 변경인·허가를 진행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에 적용된 각종 입면 색채 및 문양, 마감디자인은 외관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민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색채 심의 및 지자체 자문 등으로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을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및 사업자등록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 사실에 대한 미통보 및 통보지연, 사업자 미등록, 부가세 미신고 및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환급 관련 사항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십시오.
- 본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가구의 초등학생들은 달성초등학교로 배정될 예정이며, 중학생은 6학교군(북구)내 분산배치 가능하고 고등학생은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1학군)내 분산배치 가능하며 향후 학생배치계획 및 배정방법 등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달성초등학교의 교육시설 부족으로 교실 16실(일반교실12실, 특별교실 4실) 증축(부대시설 포함), 식당 확장, 시청각실 및 관리실 이전 재배치 공사가 되어야 적정 배치 가능합니다.

■ 벌칙 등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설계 관련 주요사항

① 일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 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착공 이후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으로 인해 경미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중대한 설계변경인 경우 추후 준공 시 입주자 사전 점검 시 공지 예정입니다.
- 단위 호실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위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옹벽, 편의 시설물, 안내시설물, 동출입구, 외부 난간 형태 / 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호실 시야 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호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계획승인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 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합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 호실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위 호실 실별 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특성상 위치, 크기, 동선 등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및 부대시설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의 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 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각 호실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면적 계산상 소수점 4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 차이로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이삿짐용 사다리차 진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 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 단열 및 마감재, 샤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호실 내·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배분되었고 위치를 지정 또는 할양하지 아니하며 대지지분의 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단지 조경(녹지)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은 인접 건물에 의해 조망, 일조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단지 및 호실 도면이 비치되어 있사오니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호실은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 등의 시설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부대시설과 가까운 주동의 경우 이동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이 계획된 주동 및 근처 인접 호실은 소음 및 환경권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모형 및 단지 현황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무인 택배 보관함이 계획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사이즈, 기둥 및 주변 상황) 및 자재수급 등에 의해 분양 시 공고된 자료와 일부 차이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서의 총 에너지 절감률 및 이산화탄소 저감률의 값은 계산 결괏값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부대시설, 저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도시가스 정압기가 지상 혹은 지하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및 냄새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 및 벽체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출입램프와 인접한 동은 차량통행 및 출차표시등에 의한 소음과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무인 택배 시스템은 일부 동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사용 및 유지 보수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단지 배치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의 도로와의 레벨 차로 인해 형태, 마감, 크기 등은 현황 레벨 및 현장여건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대지경계가 인접 건물과 간섭이 되는 등 대지경계의 조정에 따라 사업부지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사업승인 설계도서 비치)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방문은 가능하나,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 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 및 부대시설(주차장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 동선, 입면 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및 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 출입구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 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최고 층수는 해당 오피스텔 호실동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입니다.
- 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 주체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 호실은 소음(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 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쓰레기분리수거장, 주민공동시설 등) 설치로 인해 오피스텔 호실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창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특성상 층간, 호실 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 차량 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 · 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이동통신 설비, 경관조명 설비, 태양광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옥탑에는 구내용 이동통신(기간사업자) 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추후 전파조사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 지붕 층 및 옥탑 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중계장치, 급배기 휀, 소화수조 및 기타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위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설치 위치는 호 · 라인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호실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 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호실은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호실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호실 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동 주 출입구 인접 호실 및 상층 호실은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홍보물(모형, 조감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 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시공 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설비 환기구) 등의 노출이 있어, 통행로 등의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에 인접한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주차장, 부대 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동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또는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면한 인접 도로 등의 레벨 조정으로 인해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옹벽, 계단, 램프, 옹벽 등의 종류 및 위치, 노출 범위(높이/길이), 형태, 마감 사양, 디자인 등이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인허가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 차량 동선 등), 부대 복리시설(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며, 입주자에게 변경 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단위 호실, 주차장, 부대 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호실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전주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에 따른 동 간 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의 비상차로 동선 및 보도의 폭은 추후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계획승인 변경,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단지 배치,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대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 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주 형태,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DA(설비 환기탑), 쓰레기분리수거장, 지하주차장 천창 등의 위치를 계약 전 반드시 확인 바라며, 이로 인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진동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호실은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 보관소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한전 가공인입선으로 인해 저층부 조망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단지 동, 서, 북측 도로의 경우 확폭 및 신규로 조성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서 공공보행통로로 이용될 수 있으며 관리청에 도로시설물 기부채납될 예정이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단지 서측의 지상 3호선에 인접한 호실에서는 조망권, 빛 공해, 소음, 분진 등 사생활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계약해야 하며 이에 따른 어떠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및 단지 남측의 경부선 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에 관련하여 단지 전 층에 대하여 적합한 소음 영향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실내소음도 기준(45db(A) 이하)을 만족하는 것으로 결과가 예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자는 경부선 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에 관하여 국가 철도공단 및 시행, 시공사에게 어떠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 남측 경부선 철도 시설에 면하는 호실 중 일부 호실은 방음벽의 높이나 형태에 따라 조망 또는 채광, 통풍 등 생활여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관계기관 간 협의 결과에 따라 높이나 형태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당 사업 주체는 해당 시설물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관해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오피스텔 주동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호실은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색채, 입면(창호 형태 등) 및 옥상 구조물 등은 인허가 및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차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으며,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 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상가 이용자들에 의해 일부 호실은 일부 소음, 빛 공해, 냄새 등으로 피해가 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어린이 및 유아 놀이터가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됩니다.
- 각 동 24층에는 피난 안전구역으로 비상시 대피 장소, 제연휀룸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 하부 호실에서는 단열성능 저하, 진동, 소음, 환경권 등 사생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5동 3층에 부대시설이 설치되며, 인접한 저층 호실에서는 조망권, 환경권, 소음, 진동 등 사생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 및 서측에 위치한 단지 출입구에는 문주가 설치되며, 인접한 일부 저층 호실에서는 문주설치로 인한 호실 조망에 간섭 및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위치한 지하주차장 출입구 진입 램프에 위치한 지상 2층 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호실에서는 차량 소음 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5동 최상층에 EV 기계실, 펌프실 및 물탱크실이 있으며 인접한 호실에서는 환경권, 소음, 진동 등 사생활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상 및 최상층부에는 항공유도 등,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 호실에서는 빛 공해, 시야 간섭, 환경권, 소음, 진동 등 사생활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단위호실
- 단위 호실 창호는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는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 별도의 옵션품목 및 전시품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당 전시품이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공시 호실 내 화장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 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붙박이류 [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현관 바닥/주방 벽/욕실 벽 및 바닥/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부 경량벽체에는 액자, 선반 등 하중을 견디는 고정 가구 및 기계의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호실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호실의 천장 부위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깊이, 등박스의 크기, 시스템 에어컨, 스프링클러 헤드, 원형 디퓨저 등 천장 부분이 변경(위치 및 깊이 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청소용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 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의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 호실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 시스템은 실외기실 내 설치되며, 층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합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 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부 전기, 설비 공사상 일부 노출 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발코니 단차의 형태, 위치 및 레벨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 자재 내용은 형별, Type 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호실 내 부분적으로 천장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호실별 골조 상이 등으로 천장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설계 및 시공상의 이유로 호실의 모든 난간대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단위 호실 커텐박스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주방 다용도실 출입문 뒤편에 설치되며(84A형 – 주방 다용도실, 121형 – 주방 다용도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위치나 크기 등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본 공사 시 설치 위치 및 디자인과 크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벽면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커버가 돌출됩니다.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 외부 돌출형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층별로 상이하며 최하층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위층, 아래층 생활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부주의에 의한 피난구 개방 시 아래층 호실에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의 침실3에는 배연창으로서 화재 시 작동하는 자동개폐 장치가 설치됩니다.
- 각 호실의 거실 창은 소방관 진입 창으로 비상시 소방대원이 창호를 파손하고 진입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부 설치됩니다.
- 목창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호실 내, 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LGU+의 스마트홈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 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 과금 예정입니다.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호실 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 밸브 및 무인 택배 등의 상태 조회 및 제어가 가능하며,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IOT 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춥니다.
- 기본으로 제공되는 호실 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가스, 난방제어 등) 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LGU+ IOT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합니다.
- 스마트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호실 내 무선인터넷(WiFi-AP)가 설치되어야 하고(통신사 무관),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U+ 계약 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홈 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LGU+의 사업 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주)LGU+의 서비스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과 영상의 IOT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호실 내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할 경우 불법제품(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한 제품 또는 불법제품)의 설치를 금하며, 불법제품 설치로 인한 공공하수도 막힘, 악취 등 문제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주방싱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호실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에어컨 냉매 배관은 거실과 침실1만 일괄 설치되어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위치에 에어컨 설치 시 별도의 냉매 배관 공사가 필요하며, 이는 입주자가 직접 공사하여야 합니다. (단, 천장형 에어컨을 옵션으로 선택한 호실은 기본제공되는 거실/침실1 냉매 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⑤ 부대시설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의 위치 및 규모,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동지하,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벽체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각 실 크기 및 위치, 창호 크기, 위치, 재질, 외부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이 각 동 전후 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및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오피스텔용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를 통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 주체나 시공사에 시설물의 사용에 대해 그 어떠한 요청이나 중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 / 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추후 시설 이용 시 이로 인한 인근 호실 소음유입 등의 환경권 제한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입 출입구의 유효높이는 3.5M이며 1층 주차장 차량 통행구간의 유효높이는 3.5M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 2층 주차장 차량 통행구간의 유효높이는 2.3M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는 지하주차장 출입이 불가합니다. (주차장 층고 최적화를 위해 층 내부에서 일부 구간은 천정고가 다를 수 있음.)
- 오피스텔 주차대수는 총 87대로 계획(장애인 주차, 전기차(완속)주차 계획 포함) 하였으며, 차량 동선에 의한 동별 주차 배분, 출입 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 및 벽체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지상 2층에 1개소(급속 1기, 완속 1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의 사용요금 및 전기기본료는 사용자 부담 방식으로 요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사용 시 기본료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호실 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될 수 있음.)

■ 홍보물
- 오피스텔 분양 광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 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 조경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 · 홍보물이므로 호실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외 부동산, 전문투자자, 블로그(당사가 홍보자료를 제공한 블로그 포함), 인터넷 게시글 등의 자료는 당사와 무관함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등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합니다.
- 각종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 호실 평면도 및 카탈로그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명칭
- 본 오피스텔의 명칭, 동표시, 외부 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 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오피스텔 OF80 타입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시공된 PVC 창호,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호실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 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견본주택,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 옵션품목 및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됩니다.
- 본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상황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용승인 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견본주택 단위 호실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미포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은 다소 상이할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은 일정 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 자재 등을 촬영, 보관 할 예정입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 조도 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단위 호실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등)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단위 호실 실별 가구의 실 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 및 견본주택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호실 시야 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 주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변 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주변의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스위치, 콘센트, 월 패드는 성능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분양자(매도인)는 당첨일 이후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 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제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영리 목적 외국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분양자(매도인)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인하기로 합니다.

Ⅵ 기타사항

■ 자금관리 대리사무 주요사항 안내
- 코리아신탁(주)(이하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라 합니다.)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등)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총액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위해 분양수입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에게 납부하기로 합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이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합니다.
-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분양대금반환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별도)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	사업장 소재지
주택건설 공사감리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2,489,806,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68, (신한빌딩)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진전기엔지니어링	654,235,6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9, 4층 415호(성수동2가, 데시앙플렉스)
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감리	서한컨설탄트㈜	731,500,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 56, 8층(만촌동)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보증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 필증 발급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승인 또는 해당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16,637,600,000	제 03412021-104-0000600 호

- 본 오피스텔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오피스텔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 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 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해당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　　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 채 무 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 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 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 양 이 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 급 이 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 물 변 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 위 계 약】 분양 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 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　주　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분양 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 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분 양 광 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에 적법한 분양 광고를 말합니다.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 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분양 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 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 · 시공자 등과 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 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잔금 중 50퍼센트 이내에서 납부한 잔금

【보 증 채 권 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주택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주택과 주택 이외 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 증 기 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 필증 발급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 또는 해당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 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사업 주체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자금관리 대리사무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110111-2937831
시행사	㈜케이더블유개발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03, 703호(남일동)	170111-0713611
시공사	㈜태왕이앤씨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03,6층7층8층9층(남일동)	170111-0412495
분양대행사	㈜대영씨앤디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 155, 6층 (신암동, 스마일타워)	170111-0238213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견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119-8번지
- 분양 홈페이지 : www.thehonors-opera.com
- 분양문의 : 053)756-290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견본주택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모델하우스 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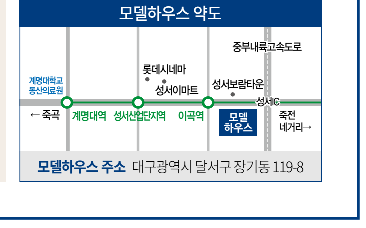

모델하우스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119-8